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46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03601	김위상의원	2024.0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3.) 상정 후 축조심사</li> <li>·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2.19.) 상정</li> <li>·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07519	김태선의원	2025.0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li> <li>·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12747	김도읍의원	2025.0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li> <li>·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li> </ul>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
2214975	김주영의원	2025.12.05.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
2215849	조지연의원	2026.01.05.	
2216497	박홍배의원	2026.02.02.	
2217147	김태선의원	2026.02.27.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3.30.)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4.7.)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구인자가 「근로기

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직업정보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규정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장 공표제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려는 제도이나, 명단공표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 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고지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오늘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직업정보 제공 및 구인광고 과정에서 거짓광고가 다수 유통될 위험이 있으므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결격사유 조항을 개정하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

정 및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과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한 사업자협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컴퓨터통신’을 예시하던 것을 ‘정보통신’으로 개정함(안 제2조의2제8호).
-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 해당 여부 고지·게재 의무를 명시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며,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안 제25조).
- 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 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마.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를 따르도록 함(안 제37조).

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하여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또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사업 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안 제38조).

사.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5조의2).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8호 중 “컴퓨터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제1호 중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를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를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 제25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4.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5.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해당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로 인하여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를 따른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을 각각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으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 략)</p> <p>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u>컴퓨터통신</u>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p> <p>9. (생 략)</p> <p>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 ⑤ (생 략)</p> <p>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u>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u>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p> <p><u>&lt;신 설&gt;</u></p>	<p>제2조의2(정의)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u>정보통신</u>----- -----</p> <p>9. (현행과 같음)</p> <p>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p> <p>1. <u>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u>----- -----</p> <p>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p>

<신 설>

2. 3. (생 략)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신 설>

<신 설>

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

2. 3. (현행과 같음)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1.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3. (생략)

<신설>

<신설>

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  
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

2. (현행과 같음)

3.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  
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  
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4.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  
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  
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  
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  
지 아니할 것

5.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  
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6.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해당 구인광고를 게시 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로 인하여 구직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신 설>

제37조(폐쇄조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폐쇄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를 따른다.

제38조(결격사유) -----  
-----직  
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다. (생략)

5. ~ 7. (생략)

<신설>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1.·2. (현행과 같음)

3. -----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4. -----  
-----  
-----  
-----  
-----  
-----

가. -----  
-----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나.·다.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①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생략)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